

#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우전부 사이의 압록강 물밑케블에 대한 안전 보호대책과 관련한 합의서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우전부는 조중 압록강 물밑케블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## 제 1 조

쌍방은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유선통신간선인 압록강 물밑케블의 안전과 조중간의 부단한 통신편락을 보장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안전보호대책을 취하는데 동의하였다.

## 제 2 조

쌍방은 자기측의 항운부문 및 관계부문과 련계를 가지고 자기측 강안에 물밑표식판 2개를 세운다.

상류표식판은 케블기준선으로부터 200미터, 하류표식판은 케블기준선으로부터 100미터 거리에 세운다.

이 두 표식판 사이를 물밀케블보호구역으로 한다.

표식판은 삼각형으로 하고 매각마다에는 붉은색 조명등을 달며 표식판에는 조중 두 나라 문자로 <정박 금지, 모래파기 금지>라고 쓴다.

(표식판 규격과 설치는 부록을 볼것)

### 제 3 조

쌍방은 각각 자기측의 항운부문 및 기타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압록강 물밀케블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호대책을 취하도록 한다.

1) 강안에서 선박들로 하여금 두 표식판 사이의 케블안전구역내에 정박하거나 케블에 손상을 줄수 있는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.

2) 배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케블안전구역내에서 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각각 자기측 통신케블관리부문의 동의를 얻어 철저한 안전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. 물밀케블관리부문으로는 조선측에서 체신부통신중계관리소로 하며 중국측에서는 료녕성우전관리국으로 한다.

그 어느 한측에서 위에 지적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케블안전보호구역내에 배를 정박시키거나 기타 작

업을 하여 물밀케블을 파손 및 절단시켰을 경우에는 피해를 준측에서 책임지고 수리비용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.

만일 피해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을 경우에 수리비용은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한다.

#### 제 4 조

쌍방의 물밀케블관리부문에서는 케블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정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호상 전화로 즉시 연계를 가지고 케블안전보호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대책을 취하여야 하며 각각 그 정형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 5 조

쌍방은 물밀케블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 변강안전기관과 연계를 가지고 케블안전보호대책을 취하며 케블의 안전에 위협한 정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호대책을 취하도록 안전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.

#### 제 6 조

본 합의서의 구체적집행단위는 조선측에서 채신

부동신증계관리소로 하며 중국측은 료녕성우전관리국으로 한다.

## 제 7 조

본 합의서는 수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

본 합의서는 체결쌍방의 동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보충할수 있다.

본 합의서는 1979년 10월 8일 베이징에서 체결되었으며 조선문과 중국문으로 작성된 두 합의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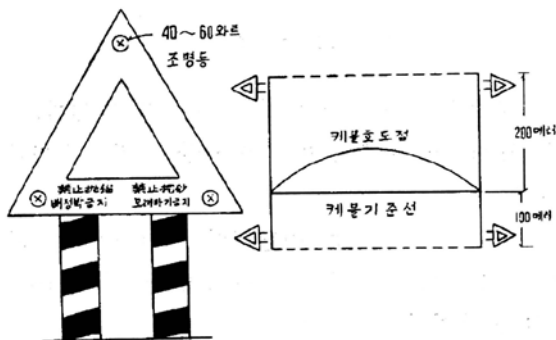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
체신부 대표단

로유익

중화인민공화국  
우전부 대표단

赵步云

## 부록



표식패설치위치도해

### 설명:

1. 표식판은 나무로 만든 정삼각형이어야 하며 한 변의 길이는 3미터여야 한다.
2. 표식판정면은 흰 바탕에 검은색번두리를 하고 검은색으로 글자를 쓰며 뒤면은 색지 않도록 꼴타르를 바른다.
3. 표식판은 두대의 나무기둥우에 세우며 그 기둥은 붉은 팽끼와 흰 팽끼로 다래무늬나게 칠한다.
4. 표식판은 지세가 높고 잘 보이는곳에 세우며

지상고도는 6미터좌우로 한다.

5. 표식판은 수상안전구역내에서 똑똑히 보이도록 강안을 마주하여 세우되 케블경사도는  $25^{\circ}$ 로 되게 한다.